A picture containing drawing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  |
| ---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안국동) T : 02) 3478-0529 F: 02) 3478-0527  변호사: 김세진, 정신영, 이일, 전수연 E-mail: info @apil.or.kr 홈페이지:www.apil.or.kr |
|  |

**[CJ]**

2020년 8월 9일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2022년 8월 24일자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1. 귀사는 “In March 2014, CJCJ suspended the purchase agreement with the four perpetrators that JTBC reported on”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귀사가 거래를 중지한 4명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귀사가 2014년 3월 위 4명에 대해 거래를 중단한 뒤 다시 위 4명이나 그 친족과 소급 납품 거래를 재개한 적이 있습니까?
  2. 귀사는 “we conduct regular assessment together with Shinan-gun local authorities to detect signs of forced labor at salt farm”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귀사는 신안군의 어떠한 부서와 언제 어떠한 내용의 assessment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습니까? 귀사는 또한 염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CJCJ is responding to human rights issues together with the local government”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귀사는 지방 정부의 어떠한 부서와 언제 어떠한 내용의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습니까? 또한 귀사는 “CJCJ will monitor the employment and labor conditions within individual salt farms within our supply chain, together with the local government”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귀사는 구체적으로 지방 정부의 어느 부서와 위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귀사의 공급망인 개의 고용 염전주 중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주)폴인사이트가 진행하는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에 협조하여 참여한 염전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3. 귀사는 “CJCJ has a selective list of key suppliers, chosen based on factors such as transaction volume, substitutability, and sustainability…none of CJCJ’s solar salt suppliers are key suppliers”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귀사는 공급망 중에서 인권영향평가 내지 인권실사를 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대성(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귀사는 “We are currently expanding the scope of our due diligence, and plan to include the solar salt supply chain,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issue”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2. 10. 4. 주신 이메일과 관련해서) 귀사는 “CJ제일제당은 천일염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계획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일정에 따라서 천일염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권실사계획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실행도 되고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 귀사의 공급망인 염전에 대한 인권 실사를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2022. 10. 4. 주신 이메일과 관련해서) “신의도천일염(주)는 설립 당시 83명의 주주(염전주)에서 현재는 44명으로 감소”하였고, “신의도천일염(주)에 공급하는 전체 43개 염전 가운데 8개 염전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의도천일염(주) 주주 가운데 단 1명의 주주만이 귀사에 염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귀사는 2014년 JTBC가 보도한 강제노동의 가해자이면 귀사의 염 공급자였던 4명에 대해 2022년 8월 24일자 답변에서 “In March 2014, CJCJ suspended the purchase agreement with the four perpetrators that JTBC reported on”라고 하면서 동시에 “those three people(three perpetrators) are currently the shareholders of Sinuido Solar Salt Corporation.”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 10. 4. 주신 이메일에 따르면 위 가해자로 처벌을 받은 3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여전히 귀사에 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In March 2014, CJCJ suspended the purchase agreement with the four perpetrators that JTBC reported on”라고 한 답변과 2022. 10. 4. 이메일의 관련 내용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2022. 10. 4. 주신 이메일과 관련해서) “신의도천일염(주)에 공급하는 전체 43개 염전 가운데 8개 염전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일 부터 2022년 10월 1일 현재까지 귀사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귀사의 공급망인 위 8개의 고용 염전에 등록된 지적장애인, 등록되지 않은 지적장애인, 경계성 장애인이 전혀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지요? 또한 2021~2022년 합동조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귀사는 귀사의 공급망인 위 8개의 고용 염전에서 등록된 지적장애인, 등록되지 않은 지적장애인, 경계성 장애인이 전혀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는지요?
  7. (2022. 10. 4. 주신 이메일과 관련해서) 귀사는 “신의도천일염(주)에 공급하고 있는 염전은 대부분 자동화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 “신의도천일염(주)에 공급하는 전체 43개 염전 가운데 8개 염전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라고 말하였습니다. 귀사가 Youngjin Green Foods과 Bigum Nonghyup을 통해 구입하는 염을 생산하는 염주는 몇 명이고 그 중에 자동화가 완료된 곳과 고용 염전은 몇 개나 되는지요? 또한 위 고용 염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염전은 몇 개나 되는지요? 위 고용 염전에서 등록된 지적장애인, 등록되지 않은 지적장애인, 경계성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는지요?